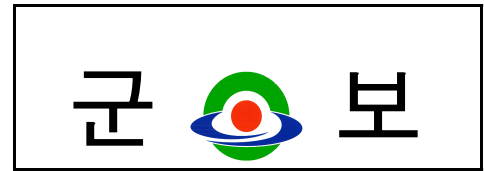


#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86호 2019. 9. 2.(월)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 고 시

-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44호)

## 공 고

- 벅스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990호)
-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992호)
- 예천군 공공하수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 사항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9-995호)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001호)
- 예천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002호)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003호)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004호)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 예천군 고시 제 2019 - 44호

###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9월 02일

예 천 군 수



####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⑤ 위치                      | ⑥ 면적<br>(금회<br>사업구간) | ⑦ 기점                 | ⑧ 종점                 | ⑨ 주요<br>통과지 | ⑩ 총연장<br>(금회<br>사업구간) |
|-----|-----|-------|------------|---------------------------|----------------------|----------------------|----------------------|-------------|-----------------------|
| 신설  | 군도  | 7호선   | 군도<br>7호선  | 지보면<br>만화리<br>일원          | 8,061㎡               | 지보면<br>만화리 3<br>86-2 | 지보면<br>만화리<br>산20-1  | 만화리         | 0.5km                 |
| 신설  | 군도  | 7호선   | 군도<br>7호선  | 지보면<br>만화리<br>일원          | 3,193㎡               | 지보면<br>만화리<br>산20-3  | 지보면<br>만화리 4<br>87-4 | 만화리         | 0.14km                |
| 신설  | 군도  | 20호선  | 군도<br>20호선 | 감천면<br>천향리<br>일원          | 35,829㎡              | 감천면<br>천향리<br>산129-3 | 감천면<br>천향리<br>산104-1 | 천향리         | 1.03km                |
| 신설  | 군도  | 22호선  | 군도<br>22호선 | 용문면<br>선리<br>일원           | 4,177㎡               | 용문면<br>선리 산2<br>2-2  | 용문면<br>선리 257<br>-5  | 선리          | 0.30km                |
| 기정  | 군도  | 24호선  | 예천~호명      | 예천읍<br>청북리~<br>호명면<br>월포리 | 110,292㎡             | 예천읍<br>청북리<br>688-14 | 호명면<br>월포리<br>540-1  | -           | 5.72km                |
| 변경  | 군도  | 24호선  | 예천~호명      | 예천읍<br>청북리~<br>호명면<br>월포리 | 110,292㎡<br>(5,005)  | 예천읍<br>청북리<br>688-14 | 호명면<br>월포리<br>540-1  | -           | 5.72km<br>(0.24)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군도 확 · 포장에 통해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지역간 교통망 연결을 통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군도7호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br>종류 |
| 계                          |       |    | 119,941         | 8,061           | 예천군         |                                       |     |    |           |
| 지<br>보<br>면<br>만<br>화<br>리 | 383-1 | 전  | 13              | 13              | 예천군         |                                       |     |    |           |
|                            | 384-1 | 전  | 343             | 343             | 예천군         |                                       |     |    |           |
|                            | 385-1 | 답  | 324             | 308             | 예천군         |                                       |     |    |           |
|                            | 385-2 | 도  | 40              | 24              | 예천군         |                                       |     |    |           |
|                            | 386-2 | 도  | 17              | 8               | 예천군         |                                       |     |    |           |
|                            | 386-4 | 답  | 1,039           | 1,039           | 예천군         |                                       |     |    |           |
|                            | 387-2 | 도  | 13              | 13              | 예천군         |                                       |     |    |           |
|                            | 387-3 | 답  | 325             | 325             | 예천군         |                                       |     |    |           |
|                            | 388-2 | 도  | 20              | 20              | 전병수         |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419                       |     |    |           |
|                            | 388-3 | 도  | 96              | 96              | 예천군         |                                       |     |    |           |
|                            | 388-5 | 답  | 294             | 294             | 전석균         |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78번<br>길 47-8, 202호        |     |    |           |
|                            | 388-6 | 답  | 22              | 22              | 김재곤 외<br>3인 |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41<br>푸른마을 푸르지오 107-1402 |     |    |           |
|                            | 426-4 | 도  | 3               | 3               | 전병두         |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419                       |     |    |           |
|                            | 427-1 | 임  | 56              | 53              | 전병두         |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419                       |     |    |           |
|                            | 427-2 | 도  | 53              | 16              | 전재훈         |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420                       |     |    |           |
|                            | 428-3 | 도  | 93              | 24              | 예천군         |                                       |     |    |           |
|                            | 428-4 | 답  | 206             | 3               | 예천군         |                                       |     |    |           |
|                            | 478-1 | 전  | 721             | 721             | 예천군         |                                       |     |    |           |
|                            | 478-2 | 도  | 13              | 13              | 예천군         |                                       |     |    |           |
|                            | 479-1 | 답  | 151             | 151             | 예천군         |                                       |     |    |           |
|                            | 479-2 | 답  | 12              | 12              | 전병우         |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412                       |     |    |           |
|                            | 480-1 | 도  | 50              | 50              | 예천군         |                                       |     |    |           |
|                            | 480-3 | 답  | 97              | 97              | 예천군         |                                       |     |    |           |
|                            | 481-1 | 도  | 50              | 50              | 예천군         |                                       |     |    |           |
|                            | 481-2 | 도  | 26              | 26              | 전재희         | 안동시 송현동 295<br>주공아파트 118-502          |     |    |           |
|                            | 481-3 | 전  | 374             | 374             | 예천군         |                                       |     |    |           |
|                            | 481-5 | 답  | 72              | 72              | 예천군         |                                       |     |    |           |
|                            | 482-1 | 답  | 293             | 293             | 전재희         | 안동시 송현동 295<br>주공아파트 118-502          |     |    |           |
|                            | 483   | 전  | 66              | 24              | 농림<br>축산식품부 |                                       |     |    |           |
|                            | 803   | 구  | 79,022          | 465             | 국토교통부       |                                       |     |    |           |
|                            | 816   | 도  | 873             | 370             | 국토교통부       |                                       |     |    |           |
|                            | 819   | 도  | 1,845           | 1,499           | 예천군         |                                       |     |    |           |
|                            | 산20-1 | 임  | 587             | 587             | 예천군         |                                       |     |    |           |
|                            | 산20-2 | 임  | 132             | 132             | 예천군         |                                       |     |    |           |
|                            | 산22-1 | 임  | 251             | 251             | 전건영 외<br>1인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br>17동 411호          |     |    |           |
|                            | 산75   | 임  | 32,349          | 270             |             |                                       |     |    |           |

○ 군도7호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br>종류 |
| 계                          |       |    | 80,991          | 3,193           |             |                 |     |    |           |
| 지<br>보<br>면<br>만<br>화<br>리 | 485-4 | 전  | 313             | 313             | 예천군         |                 |     |    |           |
|                            | 487-3 | 도  | 673             | 335             | 예천군         |                 |     |    |           |
|                            | 487-4 | 전  | 108             | 108             | 예천군         |                 |     |    |           |
|                            | 803   | 구  | 79,022          | 1,944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 839   | 도  | 476             | 94              | 국토교통부       |                 |     |    |           |
|                            | 산20-3 | 임  | 399             | 399             | 전호진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7 |     |    |           |

○ 군도20호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br>종류 |
| 계                          |        |    | 51,423          | 35,829          |     |         |     |    |           |
| 감<br>천<br>면<br>천<br>향<br>리 | 716-1  | 답  | 770             | 770             | 권충락 | 113     |     |    |           |
|                            | 716-3  | 도  | 214             | 214             | 예천군 |         |     |    |           |
|                            | 717-1  | 답  | 897             | 897             | 김원갑 | 366     |     |    |           |
|                            | 849    | 도  | 1,091           | 194             | 건설부 |         |     |    |           |
|                            | 산104-1 | 임  | 1,806           | 1,806           | 예천군 |         |     |    |           |
|                            | 산116-1 | 임  | 183             | 183             | 장봉식 |         |     |    |           |
|                            | 산117-3 | 도  | 9,309           | 9,309           | 예천군 |         |     |    |           |
|                            | 산117-6 | 도  | 98              | 98              | 예천군 |         |     |    |           |
|                            | 산118-1 | 도  | 2,496           | 2,496           | 예천군 |         |     |    |           |
|                            | 산121   | 임  | 13,091          | 1,423           | 권상한 | 관현동 134 |     |    |           |
|                            | 산122-1 | 도  | 1,839           | 1,839           | 예천군 |         |     |    |           |
|                            | 산123-1 | 도  | 205             | 205             | 예천군 |         |     |    |           |
|                            | 산126-1 | 도  | 4,901           | 4,901           | 예천군 |         |     |    |           |
|                            | 산128-1 | 도  | 8,052           | 8,052           | 예천군 |         |     |    |           |
|                            | 산129-3 | 도  | 6,471           | 3,442           | 예천군 |         |     |    |           |

○ 군도22호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br>종류 |
| 계         |        |    | 123,807         | 4,177           |             |                                           |     |    |           |
| 용문면<br>선리 | 251-2  | 도  | 43              | 43              | 정영식         | 용문면 선리 97                                 |     |    |           |
|           | 251-3  | 도  | 46              | 46              | 정영식         | 용문면 선리 97                                 |     |    |           |
|           | 251-4  | 답  | 620             | 620             | 예천군         |                                           |     |    |           |
|           | 252-1  | 대  | 15              | 15              | 예천군         |                                           |     |    |           |
|           | 257-4  | 답  | 47              | 47              | 예천군         |                                           |     |    |           |
|           | 257-5  | 도  | 125             | 125             | 예천군         |                                           |     |    |           |
|           | 260-2  | 도  | 179             | 179             | 변대우         |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8<br>해운대 대우2차아파트<br>211-204 |     |    |           |
|           | 260-3  | 전  | 268             | 268             | 예천군         |                                           |     |    |           |
|           | 261-2  | 도  | 36              | 36              | 변대우         |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8<br>해운대 대우2차아파트<br>211-204 |     |    |           |
|           | 261-3  | 전  | 263             | 263             | 예천군         |                                           |     |    |           |
|           | 262-2  | 도  | 26              | 26              | 예천군         |                                           |     |    |           |
|           | 262-3  | 도  | 63              | 63              | 예천군         |                                           |     |    |           |
|           | 262-4  | 답  | 199             | 199             | 예천군         |                                           |     |    |           |
|           | 262-5  | 답  | 332             | 332             | 예천군         |                                           |     |    |           |
|           | 263-14 | 답  | 88              | 88              | 예천군         |                                           |     |    |           |
|           | 544    | 구  | 118,542         | 385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 550    | 도  | 1,210           | 195             | 국토교통부       |                                           |     |    |           |
|           | 551    | 도  | 1,359           | 901             | 국토교통부       |                                           |     |    |           |
|           | 산22-1  | 임  | 114             | 114             | 예천군         |                                           |     |    |           |
|           | 산22-2  | 임  | 226             | 226             | 예천군         |                                           |     |    |           |
|           | 산23-1  | 임  | 6               | 6               | 예천군         |                                           |     |    |           |

○ 군도24호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br>종류 |
| 계          |       |    | 34,860          | 5,005           |             |                          |     |    |           |
| 예천읍<br>청북리 | 110-2 | 도  | 4,692           | 87              | 국토교통부       |                          |     |    |           |
|            | 110-4 | 도  | 76              | 76              | 국토교통부       |                          |     |    |           |
|            | 110-6 | 도  | 259             | 215             | 예천군         |                          |     |    |           |
|            | 110-7 | 도  | 91              | 3               | 예천군         |                          |     |    |           |
|            | 112-1 | 도  | 334             | 84              | 국토교통부       |                          |     |    |           |
|            | 112-2 | 도  | 724             | 78              | 국토교통부       |                          |     |    |           |
|            | 112-5 | 답  | 79              | 65              | 예천군         |                          |     |    |           |
|            | 113-1 | 답  | 838             | 141             | 예천군         |                          |     |    |           |
|            | 113-2 | 도  | 225             | 188             | 윤신구         |                          |     |    |           |
|            | 113-3 | 도  | 615             | 615             | 국토교통부       |                          |     |    |           |
|            | 113-5 | 답  | 436             | 436             | 예천군         |                          |     |    |           |
|            | 114-1 | 도  | 198             | 198             | 국토교통부       |                          |     |    |           |
|            | 114-2 | 도  | 807             | 311             | 예천군         |                          |     |    |           |
|            | 114-3 | 도  | 116             | 40              | 예천군         |                          |     |    |           |
|            | 115-1 | 도  | 106             | 106             | 국토교통부       |                          |     |    |           |
|            | 115-2 | 도  | 284             | 116             | 최두갑         |                          |     |    |           |
|            | 115-4 | 답  | 17              | 17              | 이자현         | 노하동 16                   |     |    |           |
|            | 1009  | 도  | 165             | 101             | 국토교통부       |                          |     |    |           |
|            | 1010  | 도  | 2,916           | 23              | 국토교통부       |                          |     |    |           |
|            | 1011  | 구  | 15,056          | 437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예천읍<br>고평리 | 740   | 구  | 1,743           | 161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 745-1 | 도  | 63              | 31              | 국토교통부       |                          |     |    |           |
|            | 745-2 | 도  | 625             | 123             | 국토교통부       |                          |     |    |           |
|            | 745-4 | 도  | 622             | 37              | 국토교통부       |                          |     |    |           |
|            | 745-6 | 도  | 129             | 18              | 국토교통부       |                          |     |    |           |
|            | 747-2 | 도  | 727             | 290             | 국토교통부       |                          |     |    |           |
|            | 747-3 | 전  | 390             | 14              | 이순애외<br>1인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br>976번길 22 |     |    |           |
|            | 748-1 | 도  | 606             | 59              | 국토교통부       |                          |     |    |           |
|            | 748-2 | 도  | 188             | 188             | 국토교통부       |                          |     |    |           |
|            | 748-3 | 대  | 258             | 50              | 김중섭         | 예천읍 청북동 184              |     |    |           |
|            | 749-2 | 도  | 331             | 325             | 국토교통부       |                          |     |    |           |
|            | 749-3 | 대  | 169             | 11              | 김중섭         | 예천읍 청북동 184              |     |    |           |
|            | 749-5 | 도  | 96              | 95              | 국토교통부       |                          |     |    |           |
|            | 824   | 도  | 327             | 93              | 국토교통부       |                          |     |    |           |
|            | 826-2 | 구  | 552             | 173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게재 생략(예천군 건설교통과 비치)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구분 | 구 모 |    |     |           | 기능       | 연장<br>(m)      | 기점                | 종점                | 사용<br>형태 | 주요<br>경과지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신설 | 소로  | 1  | 7사  | 10        | 집산<br>도로 | 500            | 지보면 만화리<br>386-2  | 지보면 만화리<br>산20-1  | 일반<br>도로 | -         |                                  | 군도<br>7호선  |
| 신설 | 소로  | 1  | 7아  | 10        | 집산<br>도로 | 145            | 지보면 만화리<br>산20-3  | 지보면 만화리<br>487-4  | 일반<br>도로 | -         |                                  | 군도<br>7호선  |
| 신설 | 소로  | 1  | 20아 | 10        | 집산<br>도로 | 1,030          | 감천면 천향리<br>산129-3 | 감천면 천향리<br>산104-1 | 일반<br>도로 | -         |                                  | 군도<br>20호선 |
| 신설 | 소로  | 1  | 22가 | 10        | 집산<br>도로 | 302            | 용문면 선리<br>산22-2   | 용문면 선리<br>257-5   | 일반<br>도로 | -         |                                  | 군도<br>22호선 |
| 기정 | 소로  | 1  | 24가 | 10        | 집산<br>도로 | 4,810          | 예천읍 청북리<br>223-5  | 호명면 월포리<br>512-2  | 일반<br>도로 | -         | 예고<br>제2019-24호<br>(2019.05.27.) | 군도<br>24호선 |
| 변경 | 소로  | 1  | 24가 | 10        | 집산<br>도로 | 4,810<br>(242) | 예천읍 청북리<br>223-5  | 호명면 월포리<br>512-2  | 일반<br>도로 | -         | 예고<br>제2019-24호<br>(2019.05.27.) | 군도<br>24호선 |

## 도로 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소로1-7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B=10m, L=500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도 7호선 소화~만화간 구간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li> </ul>          |
| -           | 소로1-7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B=10m</li> <li>L=145m</li> </ul>                                                                                                                          |                                                                                                  |
| -           | 소로1-20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B=10m, L=1,030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도 20호선 대제~관현간 구간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li> </ul>         |
| -           | 소로<br>1-22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B=10m, L=302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도 22호선 선리도로 구간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li> </ul>           |
| 소로<br>1-24가 | 소로<br>1-24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구간 선형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0.0m, L=242m</li> <li>- 예천읍 청북리 112-1</li> <li>- 예천읍 고평리 747-2</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도 24호선 양궁장진입도로 구간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경미한변경)</li> </ul> |

## 7.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항

### 가. 군계획시설사업 현황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 소로1-7사호선<br>소화~만화간 도로<br>확포장공사(9차)  | 지보면 만화리<br>386-2번지 일원   | B=10.0m, L=500m   | 실시계획 인가일~ 2020.1<br>2.31. |
| 소로1-7아호선<br>소화~만화간 도로<br>확포장공사(10차) | 지보면 만화리 산20-3<br>번지 일원  | B=10.0m, L=145m   |                           |
| 소로1-20아호선<br>대제~관현간<br>도로 확포장 공사    | 감천면 천향리 산117-3<br>번지 일원 | B=10.0m, L=1,030m |                           |
| 소로1-22가호선<br>선리도로 확포장공사             | 용문면 선리<br>262-5번지 일원    | B=10.0m, L=302m   |                           |
| 소로1-24가호선<br>양궁장진입도로 확포장<br>공사      | 예천읍 청북리<br>113-3번지 일원   | B=10.0m, L=242m   |                           |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성 명 : 예천군수

8.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 : 게재 생략(예천군 건설교통과 비치)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박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박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고향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1.00km, 주차장 조성 A=4,830.0m<sup>2</sup>

라. 사업기간 : 사업인정일 ~ 2021. 12.

마. 시 행 자 : 예천군수

###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 사유 등으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3. 보상협의 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4.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토지 소재지 | 당초 지번 | 편입면적 (㎡) | 토지 소유자 |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 비고 |
|--------|-------|----------|--------|-----|--------|------------------|----|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 구비서류 제출, 등기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 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9. 2. ~ 9. 17.(14일간 이상)

나. 장 소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4-650-6334)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다.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이내에 예천군청(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공고 된 토지상에 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나. 본 공고 이후에 식재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문서 참조

\_\_\_\_\_

- 13 -

##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 1.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기부자 명부관리·예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안 제4조 ~ 제7조)

- 기부금품 기탁자 기부증서 발급
- 기부자 각종행사 초청 및 표창장·감사패 수여, 문화·체육·복지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 기부심사위원회 공무원 위원 구성요건
- 심사위원의 해촉사유

다. 심의요구, 회의, 운영세칙 (안 제8조 ~ 제10조)

-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 및 회의 소집, 의결

###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담당: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650-6879, 팩스 : 650-6139, 이메일 : [jang6621@korea.kr](mailto:jang6621@korea.kr)

## 예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 의견(사유)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감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재단법인 예천군인재육성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행사협찬 및 장학기금 접수 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점검결과를 기부심사위원회 회부 시 첨부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심의요구에 따른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임기로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제8조제2항 관련)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전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br>번호 | 신 청 인 |     | 기탁금품액 | 기탁관서 | 기 탁<br>목 적 | 비 고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년 월 일

○○○○○ 실장·과장·소장 (서명)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건 서(제8조제2항 관련)

| 안 건 번 호     |         |  | 목 적     |  |
|-------------|---------|--|---------|--|
| 신<br>청<br>인 | 주 소     |  | 기탁금품액   |  |
|             | 성 명     |  | 기 탁 관 서 |  |
|             | 생 년 월 일 |  | 기 탁 방 법 |  |

## 1. 신청 개요

- 가. 기탁 예정일
-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 다. 기탁 사유
- 라. 사용 목적(용도)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2. 검토 의견(관련 부서)

[별지 제3호서식]

### 기탁금품접수 심의 결과(제9조제4항 관련)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 일시 :
2. 심의 방법 : 회의심의, 서면심의
3. 심의 장소 :
-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4. 심의 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예 천 군 수 귀하

##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 1. 안건 번호 :

### 2. 심의 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탁일 :

마. 기탁 관서 :

### 3. 심의결과

가. 의결 사항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나. 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이유 :

## 관 계 법 령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

####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재무과   |          |
|-------|----------|
| 연 락 처 | 650-6879 |

『예천군 공공하수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관리대행 사항 공고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에 의거 「예천군 공공하수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관리대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수



### 1. 관리대행의 목적

#### 가.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전문화된 민간관리대행업자의 기술력 활용
- 공공하수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괄 관리대행으로 책임관리 설정
- 민간업체 운영노하우와 경영마인드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확립
- 민간관리대행의 성과평가로 민간업체의 능동적 운영관리 유도

#### 나. 방류수질의 개선 추진

- 기술이 우선인 복합공정 종합플랜트 관리에 민간기술접목
- 환경·기계·전기 분야의 고급기술력이 투입되어 방류수 수질확보
- 하수 고급처리는 배출 부하량 저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유리
- 민간관리대행의 성과평가로 민간업체의 수질관리 향상 유도

##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 가. 관리대행의 내용

- 공공하수도의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관리 대행 실시
- 관리대행의 범위에 포함된 공공하수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 총용역금액 : 금15,762,925,000원/5년(금3,152,585,000원/년) 부가가치세포함

### 나. 관리대행의 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2개소)

| 구 분                     | 예천(상동) | 용궁(읍부) |
|-------------------------|--------|--------|
| 시설용량(m <sup>3</sup> /일) | 7,500  | 500    |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9개소
- 중계펌프시설 현황 : 23개소
- 오수관로 시설현황 : 75.285(km)[미호지구 관로 및 신도청 관로 포함]
- 분뇨 처리시설 : 50(m<sup>3</sup>/일)
- 수질자동측정 장치(TMS) : 1식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80(m<sup>3</sup>/일)
- 예천(상동) 총인 처리시설 : 7,500(m<sup>3</sup>/일)

## 3. 관리대행기간

- 관리대행기간 : 5년(2020.1.1. ~ 2024.12.31.)

##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주)티에스케이워터 대표 이몬드(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2번길16-0)
- (주)동화티엔피 대표 정재식(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2040-34)

##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

-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확보로 관리대행비용 조달

## 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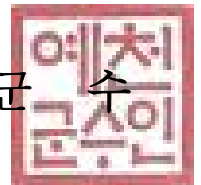
- 관리대행 성과평가 실시 : 평가주기 1년마다(단순관리 대행)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수



###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시행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보훈명예수당(월7만원→월10만원) 증액 (안 제8조제2항)

###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연 평균 258,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04, 팩스 : 054-650-6209
- 전자우편 : bae19850811@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호까지”를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참전 유공자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u>제7호까지</u> 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br>-----<br>-----<br>---- <u>제18호까지</u> -----<br>-----<br>-----<br>-----<br>-----.                            |
| ② 수당은 월 <u>7만원</u> 으로 한다.                                                                                                                                      | ② ----- <u>10만원</u> -----.                                                                                                        |
|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수당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u>제7호까지</u> 의 대상자 및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br>-----<br>-----<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u>제18호</u> -----<br>-----<br>-----<br>-----. |
|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u>지원대상</u> 에서 제외한다.                                                                                                  | ② -- <u>지원 대상</u> -----<br>-----<br>-----.                                                                                        |
| 2.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u>참전 유공자 미망인</u> 복지수당 지원대상자                                                                                             | 2.-----<br>-----<br>----- <u>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 -----                                                                             |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인 것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확대. 보훈명예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증액.

####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 100,000원 × 346명 × 12개월 = 415,200,000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소계(a)   |      |      |      |      |      |        |
| 세출          | ○보훈명예수당 | 415  | 415  | 415  | 415  | 415  | 2,075  |
|             | 소계(b)   | 415  | 415  | 415  | 415  | 415  | 2,075  |
| □ 총 비용(a-b) |         | -415 | -415 | -415 | -415 | -415 | -2,075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도<br>비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군비      |      | 415  | 415  | 415  | 415  | 415  | 2,075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415  | 415  | 415  | 415  | 415  | 2,075 |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배서현 (054-650-6204)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훈명예수당 확대지원 소요예산 : 415,000천원 정도

○ 보훈명예수당 : 100,000원 × 346명 × 12개월 = 415,000,000원

##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 주민복지실 |          |
|-------|----------|
| 연 락 처 | 650-6204 |

## 「예천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부서평가, 읍면평가, 부서·읍면 우수사례 평가)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부서에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인센티브 지급분야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우수부서 분야 신설

- 인센티브 지급분야 : 총 11개
  - 현행(10개) : 기관평가, 투자유치, 국도비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 시책발굴, 규제개혁, 의로운공무원, 주민숙원해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 신설(1개) :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우수부서 분야

|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우수부서 분야                                    | 포 상 금                  |                      |                      |
|----------------------------------------------------------|------------------------|----------------------|----------------------|
| 부 서 평 가                                                  | 3 0 0 만 원<br>( 최 우 수 ) | 2 0 0 만 원<br>( 우 수 ) | 1 5 0 만 원<br>( 장 려 ) |
| 읍 면 평 가                                                  | 3 0 0 만 원<br>( 최 우 수 ) | 2 0 0 만 원<br>( 우 수 ) | 1 5 0 만 원<br>( 장 려 ) |
| 부 서 · 읍 면<br>우수 사례 평가                                    | 1 5 0 만 원<br>( 최 우 수 ) | 1 0 0 만 원<br>( 우 수 ) | 8 0 만 원<br>( 장 려 )   |
| ※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br>매년 초 수립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계획을 따름 |                        |                      |                      |

### 3. 개정규칙안

- 불임과 같음

###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051 팩스 054-650-6059
- 전자우편 : [kurs29@korea.kr](mailto:kurs29@korea.kr)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군정 주요업무 추진평가 우수부서 분야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조제11호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평가 우수부서 분야는 별도 신청없이 부서별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11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평가결과 공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 평가단위                | 포상금 |                                          |                 |
|---------------------|-----|------------------------------------------|-----------------|
| 중앙단위 평가             | 부 서 | 기본금액(군 자체)                               | 추가금액            |
|                     |     |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br>(1위) (2위) (3위 이하) | 중앙평가에 따른 별도 시상금 |
|                     | 유공자 | 특별휴가 2일                                  |                 |
| 도단위 평가              | 부 서 | 기본금액(군 자체)                               | 추가금액            |
|                     |     | 150만원, 100만원, 70만원<br>(1위) (2위) (3위 이하)  | 도평가에 따른 별도 시상금  |
|                     | 유공자 | 특별휴가 2일                                  |                 |
| 중앙 및 도단위<br>민간기관 평가 | 부 서 | 100만원, 70만원, 50만원<br>(1위) (2위) (3위 이하)   |                 |
|                     | 유공자 | 특별휴가 2일                                  |                 |

※ 중앙 및 도 주요평가 수상으로 별도 시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군 자체) 기준금액에 별도 시상금을 합한 총 금액 범위내에서 부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 등급 없이 다수 기관에 수여되는 기관표창의 경우  
평가 단위별로 중간등급(2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동추진 수상 경우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타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70%), 협조부서(30%)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30%), 협조부서(70%) 지급

### 2. 투자유치 분야

| 평가단위(투자유치액)         | 포상금   |       |
|---------------------|-------|-------|
|                     | 부 서   | 유공자   |
| 200억원 이상            | 125만원 | 250만원 |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75만원  | 150만원 |
|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25만원  | 50만원  |

※ 투자유치액 기준

○ 산업단지 내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상의 총 투자금액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상의 총 분양금액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분양(or 매매)금액 + 건축비

※ 투자유치일 기준

○ 산업단지 내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공문 제출일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작성일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일

※ 투자유치 담당직원의 경우 50%를 감하여 포상금 지급함(부서는 해당없음)

### 3-가. 공모사업 분야

| 평가단위(국도비 합계 금액)   | 포상금   |       |
|-------------------|-------|-------|
|                   | 부 서   | 유공자   |
| 70억원 이상           | 125만원 | 250만원 |
| 4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
| 15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75만원  | 150만원 |
| 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 5억원 미만            | 25만원  | 50만원  |

※ 최초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내시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함.

※ 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 불가

### 3-나. 신규 현안 사업 분야

|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 포상금   |       |
|---------------------|-------|-------|
|                     | 부 서   | 유공자   |
| 150억원 이상 ~          | 125만원 | 250만원 |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
| 6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75만원  | 150만원 |
| 30억원 이상 ~ 60억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 신규 국도비 사업이면서 1차년도 사업 추진 후 신청가능  
(미 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가능)

#### 4. 예산절감 분야

|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 포상금  |       |
|------------------|------|-------|
|                  | 부 서  | 유공자   |
| 10억원 이상          | 75만원 | 150만원 |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25만원 | 50만원  |

#### 5. 세입증대 분야

|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 포상금  |       |
|-------------------|------|-------|
|                   | 부 서  | 유공자   |
| 1억원 이상            | 75만원 | 15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25만원 | 50만원  |

#### 6. 시책개발 분야

| 평가단위                         | 포상금  |       |
|------------------------------|------|-------|
|                              | 부서   | 유공자   |
| 시책(자체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br>큰 경우 | 75만원 | 150만원 |
|                              | 50만원 | 100만원 |
|                              | 25만원 | 50만원  |

※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7. 규제개혁 분야

| 평가단위                             | 포상금 |                   |
|----------------------------------|-----|-------------------|
| 중앙 및 도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개혁<br>(제도개선) | 유공자 |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 8. 언론보도 분야

| 평가단위                            | 포상금 |                   |
|---------------------------------|-----|-------------------|
| 의로운 공무원 및 우수 공무원으로<br>언론보도 된 경우 | 유공자 |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 언론보도는 한국 ABC 기준 유료부수 4만부 이상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경우를 말한다.

## 9. 주민숙원해결 분야

| 평가단위                | 포상금 |                   |
|---------------------|-----|-------------------|
| 집단·고질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 등 | 유공자 |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 집단민원, 고질민원, 주민숙원사업이 완결된 경우 신청가능함

## 10.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 평가단위          | 포상금 |                   |
|---------------|-----|-------------------|
|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공적 | 유공자 |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 11.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우수부서 분야

| 평가단위                                                    | 포상금 |                |               |               |
|---------------------------------------------------------|-----|----------------|---------------|---------------|
| 부서평가                                                    | 부서  | 300만원<br>(최우수) | 200만원<br>(우수) | 150만원<br>(장려) |
| 읍면평가                                                    | 부서  | 300만원<br>(최우수) | 200만원<br>(우수) | 150만원<br>(장려) |
| 부서·읍면 우수사례 평가                                           | 부서  | 150만원<br>(최우수) | 100만원<br>(우수) | 80만원<br>(장려)  |
| ※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초 수립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계획을 따른다.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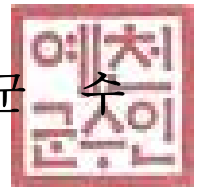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인센티브 지급분야) 군수는<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br>하는 공적이 있는 부서 및 직원<br>에게 별표에 따라 인센티브를<br>지급할 수 있다.<br>1. ~ 10. (생 략)<br><u>&lt;신 설&gt;</u> | 제4조(인센티브 지급분야) -----<br>-----<br>-----<br>-----<br>-----.<br>1. ~ 10. (현행과 같음)<br><u>11.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우<br/>수부서 분야</u>         |
| 제5조(인센티브 신청) ① ~ ④<br>(생 략)<br><u>&lt;신 설&gt;</u>                                                                                    | 제5조(인센티브 신청) ① ~ ④<br>(현행과 같음)<br><u>⑤ 제4조제11호의 군정 주요업<br/>무 추진평가 우수부서 분야는<br/>별도 신청 없이 부서별 제출한<br/>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br/>다.</u> |
| 제7조(심의) ① ~ ③ (생 략)<br><br><u>&lt;신 설&gt;</u>                                                                                        | 제7조(심의) ① ~ ③ (현행과 같<br>음)<br><u>④ 제4조제11호의 경우에는 군<br/>수의 결재를 받은 평가결과 공<br/>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u>                               |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수



###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월 7만원→월 10만원) 증액 (안 제4조제1호)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월 3만원→월 5만원) 증액 (안 제4조제2호)

###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연 평균 562,8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04, 팩스 : 054-650-6209
- 전자우편 : bae19850811@korea.kr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예천군 조례 제 호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br>-----<br>-----<br>-----. |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u>7만원</u> 지급                                      | 1. -----<br>--- <u>10만원</u> ---             |
|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u>3만원</u> 지급                               | 2. -----<br>----- <u>5만원</u> -----          |
| 3. · 4. (생    략)                                                       | 3. · 4. (현행과 같음)                            |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증액.

#### 2. 비용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0,000원 × 448명 × 12개월 = 537,60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50,000원 × 339명 × 12개월 = 203,400,000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세입          | 소계(a)                  |      |      |      |      |      |        |
| 세출          | ○참전유공자<br>명예수당         | 538  | 538  | 538  | 538  | 538  | 2,690  |
|             | ○사망한<br>참전 유공자<br>명예수당 | 203  | 203  | 203  | 203  | 203  | 1,015  |
|             | 소계(b)                  | 741  | 741  | 741  | 741  | 741  | 3,705  |
| □ 총 비용(a-b) |                        | -741 | -741 | -741 | -741 | -741 | -3,705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국비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 군비   | 741  | 741  | 741  | 741  | 741  | 3,705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741  | 741  | 741  | 741  | 741  | 3,705 |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배서현 (054-650-6204)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액에 따른 소요예산 : 538,000천원 정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000,000원 × 448명 × 12개월 = 538,000,000원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증액에 따른 소요예산 : 203,000천원 정도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50,000원 × 339명 × 12개월 = 203,000,000원

## 관 계 법 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주민복지실 |          |
|-------|----------|
| 연 락 처 | 650-6204 |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예 천 군 수



### 1. 개정이유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4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중복된 규정  
조문으로 삭제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보건소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2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 전화 : 054-650-8012    팩스 054-650-6479
- 전자우편 : pitch123@korea.kr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u><br><u>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u><br><u>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u><br><u>예를 준용한다.</u> | <u>&lt;삭 제&gt;</u> |